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마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3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발 의 자 : 박마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남창진 · 김영한 · 한명희 · 송재형 ·
강구덕 · 최관술 · 장인홍 · 박기열 ·
김용석(서초) · 허기회 · 이병해 ·
진두생 · 김진철 · 우형찬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 바,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,
- 상위법령인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28102호, 2017. 6. 13. 일부개정, 2017. 6. 13. 시행)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의 문장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,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범위를 명확히 함.
(안 제3조제2항)
- 나. 학부모위원 및 학급별 대표,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.(안 제4조제1항·제2항 및 제3항)

다.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.(안 제4조의2 신설)

라. 상위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맞추어 '유치원규정'을 '유치원규칙'으로 수정함.

(안 제10조제1항제1호)

마. 보고의 주체와 보고받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 규정함.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아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하되,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”을 “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”로 한다. 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있으며,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 이 경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, 우편,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.

③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자격) 학부모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영 제22조의4제4항”을 “영 제22조의4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유치원규정”을 “유치원규칙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보고 등)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10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2항 단서 중 “이를 게재하지”를 “게재하지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영 제22조의10”을 “영 제22조의11”로 한다.

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간사는”을 “운영위원회에”로, “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”를 “처리할 간사를 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, <u>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1. 학부모위원: <u>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</u></p> <p>2. 교원위원: <u>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, 우편,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<u>있으며,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 다만, 학부모위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</u></p>	<p>제3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정한다.</u></p> <p>1. ----- <u>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</u></p> <p>2. ----- <u>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선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있다.</u></p> <p><u><단서 삭제></u></p>

회의에서 선출하며,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, 우편,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<신 설>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· ② (생 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 이 경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, 우편,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.

③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
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제4조의2(위원의 자격) 학부모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

③ 제1항에도 -----

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영 제22조의4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0조(심의사항) ① 운영위원회는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4 및 영 제22조의5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치원규정의 제·개정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조(보고 등) 영 제22조의9에 따른 서면보고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회의록 작성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

-----.

제9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영 제22조의4제5항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심의사항) ① -----

-----.

1. 유치원규칙-----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보고 등)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10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회의록 작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영 제22조의7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9조(소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영 제22조의10에 따라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20조(간사)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
<신설>

-----.

----- 게재하지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소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영 제22조의11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간사) ① 운영위원회에 ----- 처리할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